

에이스운전자상해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 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 제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상품의 특이사항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범위는 단순히 교통 상해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 운전자 비용손해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보험기간 (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3)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 지급사유

구분	담보	내용
기본	교통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교통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교통 상해의료비	교통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일당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교통상해소득보상금	교통상해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경우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주말교통상해시(금요일 오후 포함)	
특약	운전자 비용손해	벌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확정 판결 시
		방어비용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경찰기소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사망케 하거나, 10대 종과실 사고(무면허, 음주운전 제외)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이상 치료시합의금 지급
		운전면허정지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행정처분상 면허정지시 60일한도로 일당액 지급
		운전면허취소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면허취소시 위로금으로 정액지급
		차량대체비용	자동차 운전중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에 전부손해(사고발생시 차량가액 기준)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자동차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을 경우 180일한도로 일당액 지급
		긴급비용	자동차 운전중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 1. 교통사고라 함은

- 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② 운행중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③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의 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자동차의 화재,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를 말합니다.
2.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나.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1) 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2)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상해의료비 :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며,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의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입원일당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입원일당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5) 벌금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단,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하며,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의 부담한 벌금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 운전자비용손해(벌금 제외) :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비용손해로 지급합니다.

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1)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교통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비, 기타상해담보의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 피보험자의 사형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방사능 관련 오염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등.

- ② 운전자비용손해담보의 경우
 -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정한 사항
 -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의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나. 보험료 산출 예시

가입 예) 보험기간 1년, 교통상해급수 1급, 40세 남자, 월납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기본계약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억원
	상해의료비	500만원
	교통상해소득보상금	1억원
	교통상해입원일당	3만원
선택계약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형사합의지원금	5,00만원
	벌금	2,000만원
	방어비용	200만원
	운전면허정지위로금	2만원
	운전면허취소위로금	200만원
	긴급비용(견인비용)	10만원
	생활안정자금	2만원
차량대체비용	100만원	
보험료		25,640원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의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1) 보험형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